

정 관

사단법인 광주희망재단

사단법인 광주희망재단 전문

I. 사회적 측면 : 사단법인 광주희망재단(Kwang-Ju Hope Foundation)은 ‘광주시민에 의하여, 광주시민을 위한, 광주시민이 주인인 재단’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올바른 나눔을 실천하고자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또한, ‘광주희망재단’은 이 나라와 시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보편적 복지(장애인복지, 영유아·청소년복지, 독거노인 등 실버복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 편부모가정에 대한 복지, 불우한 가정에 대한 복지 등), 각 제도적 현상 등과 관련한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보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부와 후원활동에 가장 우선적으로 힘씀으로서, 이 지역사회에 좌절보다는 희망이, 아픔보다는 소망이 넘쳐나는 나눔의 문화가 크게 발산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성장하는데 일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I. 교육적 측면 : 사단법인 광주희망재단(Kwang-Ju Hope Foundation)은 우리의 삶속에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을 교육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또한, ‘광주희망재단’은 또 다른 공익단체 등과 연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III. 미래지향적 측면 : 사단법인 광주희망재단(Kwang-Ju Hope Foundation)은 이미 고착화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적 물질만능 등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여, 상부상조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의 의미를 깨우침으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펼쳐질 미래의 이 사회는 현재보다 자유, 평등, 인권존중, 헌신과 봉사, 나눔과 배려, 창조와 개혁의 정신 등의 인류의 보편적가치가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기폭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그 명칭을 ‘사단법인 광주희망재단’이라 칭하고, 영문으로 ‘Kwang-Ju Hope Foundation’이라 표기한다(이하, ‘본 법인’이라 칭함).

제2조 (사무소)

본 법인은 주사무소를 광주광역시에 두며, 국내, 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① 본 법인은 ‘광주시민이 주인이 되는 재단’임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갖가지 복지, 현상 등과 관련한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여 그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둔다.

② 본 법인은 우리사회의 기부문화가 보다 확산되어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또 다른 공익단체 및 개인들과 연계·후원을 하고, 우리사회가 나눔을 통한 성숙한 사회공동체로 성장, 변화를 위한 교육을 하는데 목적을 둔다.

③ 본 법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보다는 내일을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에게 나눔이 있는 문화가 얼마나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인지, 함께 가는 사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리는데 목적을 둔다.

제4조 (정치적 중립)

본 법인은 정당과 선출직 후보 등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단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진다.

제2장 사 업

제5조 (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올바른 기부문화와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업 전개
2. 개인 및 단체의 지정기탁에 따른 기금 및 특정주체를 갖는 목적형 기금 조성
3. 기업과 사회의 양자간 발전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전개
4.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적이며 지속가능한 공익사업 지원
5.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전개
6.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한 교육사업 전개
7. 공익단체들이 올바른 기부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컨설팅사업
8.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전개
9. 기타 본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제6조 (수익사업)

본 법인은 제5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제5조의 목적사업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 출판사업
2. 캐릭터, 팬시 등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
3. 부동산임대사업 및 전대사업
4. 예술품 및 소장품 등 기부물품 경매사업
5.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제3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후원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고, 각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후원회원의 회원자격은 본 법인의 전문과 목적 등의 취지에 동의하고, 후원회원으로서의 가입절차를 준수하면서, 소정액의 정기기부금만을 후원하는 자로 한다.

2. 정회원의 회원자격은 본 법인의 전문과 목적 등의 취지에 동의하고, 정회원으로서의 가입절차를 준수하면서, 제9조의 회원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의 회원자격은 본 법인의 전문과 목적 등의 취지에 동의하고, 특별회원으로서의 가입절차를 준수하면서, 제9조의 회원의무사항 이행 및 본 법인의 후원회 규칙에 의하여 후원회 활동도 함께 하는 자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본 법인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총회에 참석하여 본 법인에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사항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 법인의 모든 회원은 본 법인의 시설과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관 및 제반 규칙 등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 회비 및 제반부담금의 납부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본 법인을 통하여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본 법인에 회원(후원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각 회비를 내고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비로서 회원이 된다. 단,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 승인은 이사장의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법인을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정기기부금이나 회비 등의 미납 등으로 자연적으로 탈퇴 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탈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탈퇴시 이미 납입한 각 회비 등 제반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 (회원의 징계)

① 본 법인의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행한 경우,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나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의한 경우

② 본 법인은 회원을 징계함에 있어서 당해 회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회원의 포상)

① 본 법인의 전문 및 목적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활동을 하였거나,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임원·명예임원·회원 또는 비회원 등에게 상패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3조 (회원의 재가입)

본 법인의 회원이 탈회 또는 제명이 된 경우, 재가입시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재가입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재가입 승인을 얻은 회원은 승인일로부터 회원의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4조 (임원의 구성)

본 법인의 임원의 구성은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임원의 자격과 제한)

① 임원은 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정당을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 최대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② 이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수는 이사 인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여 이사장이 총회에 공표함으로써 취임한다. 단, 총회에 공표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심의·의결 및 이사장의 공표만으로도 임원에 취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본 법인이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 1. 임원의 선출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2. 이력서(사진 첨부) 1부
- 3. 취임승락서 1부

⑤ 이사회 권한을 위임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일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상근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이사회 심의·의결 및 이사장의 총회에 공표를 통하여 해임할 수 있다. 단, 총회에 공표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심의·의결 및 이사장의 공표만으로도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본 법인의 전문이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행위 등 기타 위 각 호에 이를만한 행위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행위

제19조 (이사장의 선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20조 (이사장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 의장이 된다.
- ③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고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 (상근임원의 직무)

- ① 상근임원은 상임이사 1인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상근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 ② 상근임원은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상근임원은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위임에 의하여 법인 사무 전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주요사항 집행에 대해 이사장의 위임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본 법인이 후원하는 타단체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본 법인이 후원하는 타단체 등의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5장 명 예 임 원

제24조 (명예이사장 등 명예임원)

① 본 법인은 필요한 경우 법인의 전문과 목적에 동의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의 저명인사로 명예이사장, 명예이사, 고문위원, 자문위원 등 본 법인에 대한 의결권 없는 약간 명의 명예임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이사장 등 명예임원은 각 임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제6장 총 회

제2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임원과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본 법인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각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

한다.

1. 본 법인의 정기총회는 연 1회이고, 매 회계연도 1개월 이전까지 개최한다.
2. 본 법인의 임시총회는 본 법인의 운영, 신임임원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총회 소집시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이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본 법인의 총회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특별히 다른 정족수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법인의 해산의 경우에는 제48조의 정족수에 의하여 의결한다.
2. 각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 등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임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회의 개시 전에 미리 제출·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 (총회의 의결사항 및 공표)

본 법인의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승인·의결할 수 있고, 이사장은 이하 각 호의 공표사항은 총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한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공표
2.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계획의 공표
3. 이사회에서 의결한 예산·결산의 공표
4.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본재산의 취득 및 자금차입 등에 관한 공표
5. 본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

6.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
7. 중요한 안건으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 회부된 사항에 대한 의결
8. 기타 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사항

제29조 (총회 의결제척사유)

본 법인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금전 등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본 법인과 회원 자신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
2. 기타 위 1항에 준할만한 중대한 사유로서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30조 (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본 회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장 이 사 회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다만, 감사와 명예임원들은 이사회의 참석은 가능하되 의결권은 없고, 이사회 의장의 동의하에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이사장이 분기별로 3개월마다 소집한다.
- ②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코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 ⑤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장 및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회의 개시 전에 미리 제출·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본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내용에 대한 심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칙 등의 제정·변경·개폐 등에 관한 사항
- 3. 본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제반사항
- 4. 본 법인의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 5. 이사장, 임원, 명예임원의 선임 및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해임 및 회원의 탈회 및 임원 또는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9. 총회에 부의할 안건 등의 작성에 관한 사항
- 10.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

이 부의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34조 (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금전 등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본 법인과 자신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할만한 중대한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된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5조 (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회, 회의중지, 산회 일시
 3. 출석 이사의 성명 및 수
 4. 부의안건과 토의내용
 5.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6.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언자의 발언에 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3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 ① 회의록에는 이사장,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 날인한다.
- ② 회의록은 본 법인 사무국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8장 재 정

제37조 (재산의 구분)

- ① 본 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제38조 (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특별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기본재산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기타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총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③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차입을 하고자 할 경우 또는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총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④ 본 법인 및 본 법인의 임원 등은 목적사항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 (수입금 및 수입금의 사용)

- ① 수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사업 및 모금사업을 통한 기금
 2. 후원금 및 기부금
 3. 회비 및 보조금
 4. 기타 본 법인의 각 사업 등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
- ② 본 법인의 위 제1항의 수익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본 법인의 운영자금 등을 제외하고, 본 법인의 전문과 제3조 목적 및 제5조 사업에 따라 본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40조 (예산과 결산)

①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 까지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총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 보조금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총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1조 (회계구분)

① 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 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2조 (임원의 보수 등)

①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보수를 지급한다.

②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는 연 1 회 이상 실시한다.

제9장 사무국

제45조 (설치와 구성)

- ① 본 법인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을 위하여, 또한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의 편제, 임무, 사무요원의 자격, 임금 등 근로조건 등 제반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제10장 후원회

제46조 (후원회의 구성)

- ① 본 법인은 본 정관의 '전문'과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본 법인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본 법인의 후원회 회장은 본 법인의 명예이사장이 우선적으로 맡으며, 명예이사장이 맡을 수 없는 경우에는 후원회 회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③ 본 법인의 이사(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는 후원회 회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다만, 감사와 명예임원은 후원회 규칙에 의하여 후원회에 가입하는 자에 한하여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 ④ 본 법인의 후원회 회장 선임 이외의 후원회를 운용하는 세부사항은 별도의 후원회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47조 (법인 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제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8조 (법인의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민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50조 (규칙 제정)

본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후원회·사무국 운영 등 제반 세칙 및 규정은 이 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51조 (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과 행정자치부 및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52조 (신분 등에 따른 차별금지)

- ① 본 법인의 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법인의 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종교, 정치성향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제53조 (홈페이지 정보공개)

본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등을 다음 년도 3월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 (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법인설립준비행위와 그에 관한 소요 비용은 본 법인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장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본 법인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재산, 임원명단 및 본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지와 같다.